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984

발의연월일 : 2020. 11. 5.

발 의 자:도종환・이상헌・김승원

김병기 · 이병훈 · 박 정

안민석·오영환·최혜영

임오경 · 이정문 · 기동민

장경태 · 민형배 · 김철민

이재정 • 이규민 • 김용민

서영석 · 유정주 의워

(209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도서정가제와 관련하여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최근 도서 전시장 및 지역 문화거점 역할을 하는지역서점의 소멸위기가 지속·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서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역서점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으나, 이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서정가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법적 정비를 하는 한 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 요한 지원 등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도 모하고 지역서점의 활성화 정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 2조, 제7조의2, 제16조의4, 제22조, 제27조의2 및 제28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서점"이란 간행물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행위를 업(業)으로 하는 장소·시설 또는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조의2(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이하 "지역서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활 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1. 관할지역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
 -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에 대하여 사업자등 록을 하였을 것
 -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 수립 및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서점에 관한 실 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결과 지역서점이 존재

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관할 지역의 도서관에서 도서구매 시 지역서점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지역서점에 관한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4제4호 중 "활성화 및 유통 선진화 지원"을 "활성화, 유통 선진화 지원 및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전단 중 "18개월"을 "12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도서관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에게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정가의 10퍼센트 이내의 가격 할인만 제공할 수 있다.

제27조의2 중 "완화"를 "강화·완화"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u><신 설></u>	9. "서점"이란 간행물을 최종소
	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행위를
	업(業)으로 하는 장소・시설
	또는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
	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
	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
	의 영업장을 말한다.
<u><신 설></u>	제7조의2(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
	점(이하 "지역서점"이라 한다)
	에 대하여 활성화 정책을 수립
	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
	<u>야 한다.</u>
	1. 관할지역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지역서점 활성화 정
 책 수립 및 지원에 필요한 기
 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
 역서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
 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
 사 결과 지역서점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별도의 지원책
 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 서점 활성화 정책의 수립을 위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 감과 협력하여 관할 지역의 도 서관에서 도서구매 시 지역서 점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지역서점에 관한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 제16조의4(진흥원의 직무) 진흥원 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 한다.
 - 1. ~ 3. (생략)
 - 4. 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위한제작 <u>활성화 및 유통 선진화</u>지원
 - 5. ~ 10. (생략)
-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 매) ① (생 략)
 - ② 발행일부터 <u>18개월</u>이 지난 간행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가(定價)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가표시는 제1항을 준용한다.
 - ③ ~ ⑤ (생 략) <u><신 설></u>

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4(진흥원의 직무)
1. ~ 3. (현행과 같음)
4
활성화, 유통 선진화 지원
및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5. ~ 10. (현행과 같음)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
매) ① (현행과 같음)
② <u>12개월</u>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
기관 및 「도서관법」제2조제4

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에게 간

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정가의

10퍼센트 이내의 가격 할인만

제공할 수 있다.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u>⑥</u>·<u>⑦</u> (생 략)

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간행물의 정가표시 및 판매(할인율을 포함한다) 제도에 관하여는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u>300만원</u>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7. (생략)

② (생 략)

$\underline{?} \cdot \underline{8}$ (현행 제6항 및 제7항
과 같음)
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강화 • 완화
제28조(과태료) ①
500만원
<u>.</u>
1.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